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의안 번호	25-101
----------	--------

2025. 8. 29.
전문위원 신준호

1. 제출경위

- 가.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(자원순환과)
- 나. 제 안 일 : 2025. 8. 14.
- 다. 회 부 일 : 2025. 8. 18.

2. 제출이유

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된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」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운용관·기금출납원에 관한 내용을 현재 법령에 맞게 수정하고자 제출됨.

3. 주요내용

- 가. 제명을 올바른 띄어쓰기로 정비함
- 나.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(안 제2조의2)
- 다. 기금운용관·기금출납원 관련 법령을 현재 법령에 맞게 수정(안 제12조 제3항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지방자치법」
- 2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출

다. 기타

- 1) 입법예고 : 2025. 7. 10. ~ 2025. 7. 30. (의견 없음)

5. 검토의견

가. 조례 개정 배경

- 본 개정조례안은 동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 예정에 따라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제3항 기금의 계속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근거하여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.
- 아울러, 제명의 띄어쓰기와 조례의 인용 범명을 현행화하고자 제출됨.

나. 주요 조문 검토

- 조례 제명의 띄어쓰기 수정
 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 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 - 로 수정

- 안 제2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을 “2025년 12월 31일”에서 “2030년 12월 31일”로 5년 연장. 이는 법령의 재량 사항을 근거로 하고 있어 위법성은 없으나, 기금 유지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.
- 안 제12조제3항 조문의 적용 법을 「지방재정법」에서 「지방회계법」으로 수정함.

다. 종합의견

-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에 따라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설치되었음.
- 마포구 2025년 기금의 사업 편성내역을 살펴보면
 - 폐기물분리배출 홍보요원 인건비와
 -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물 등의 사무관리비
 - 주민편익시설 운영비의 전출금
 - 청소수거차량 등의 자산취득비로 구성되어 있음.
- 집행부에서는 상기 사업 등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주민편익시설 운용수입, 예금이자수입 자치단체간부담금 등의 수입 관리를 위해 존속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임.
- 존속기한 연장 개정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치가 필요할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였기에 법률의 위배 요소는 없음.
- 다만, 동 기금은 ‘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폐기물 광역처리에 관한 협약서’에 따라 중구, 용산구, 종로구, 서대문구에서 마포구에 납부하는 금액 및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기반으로 조성되고 자원회수시설

설치에 따라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주민복지증진 등에 집행되도록 하고 있음.

- 그러나, 기금의 설치 근거 법령인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을 정하고 추진해야 하는데, 현행 기금 운용계획에는 지정 주민편익시설 운영 전출금을 제외하고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복리증진 사업은 미비한 것이 현실임.
- 따라서, 주민복리증진 사업 확대 의지에 대한 검증 등의 면밀한 심의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기금 존폐에 대한 합리적 판단과 기금의 존속 필요성을 심의하여 의회 재정통제권을 확보해야겠음.
- 기타 개정사항은 별다른 문제 없음.

[관 계 법 령]

「지방자치법」

제159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(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)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7. 24.>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15. 7. 24.>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신설 2015. 7. 24.>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

제7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)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"기금운용심의위원회"라 한다)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12. 10.>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, 장소, 참석자,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